< 성인지 예산서 개요 >

◈ 성인지예산제도(性認知豫算制度, gender-responsive budgeting) :

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 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액에 반영하는 제도

◈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특별회계

◈ 대상사업

-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

구 분	대 상 사 업	비 고
필수	○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	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
	○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	성별영향분석 평가법(2012.3.16시행)사업에 따른 최근 2017년 성별영향분석 평가 대상사업
권장	○ 자지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	지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

◈ 제외대상 :

○행정운영경비, 재무활동 등

-행정운영비경비: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

-재무활동: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

-예비비: 사업을 특정하거나, 성평등(성과목표)정하기 곤란

◈ 성인지 예산서 성격 :

○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,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, 성과목표,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 보고서(예산서 부속서류)